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94
----------	------

2025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박춘선 의원 외 29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 2)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의 납부 기한과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제3항¹⁾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동 조례 제18조의2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가로수 조성·관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 기한 및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2월²⁾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안 제21조와 제23조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³⁾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용 징수와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의 조항은 그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이나 적절하지 않은 체계 등을 정비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3)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가로수의 식재 기준)”을“(식재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앞의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18조로 하고, 제7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7조의3을 제10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2)의 제목“(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을“(도로별 식재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를“(도로표지판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가로수 관리”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외과수술 등)”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관리시설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의 제목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을 “(주민참여 등)”으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8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담”을 “30일 이내에 납부”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21조 및 제2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을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이를 징수”를 “징수”로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5]

원인자부담금(제22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p>1. 별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 ~ 제4조의2</u> (생략)	<u>제2조 ~ 제4조</u> (현행 제3조부터 제4조의2까지와 같음)
<u>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u> (생략)	<u>제7조(식재 기준)</u>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 ① ~ ③</u> (생략)	<u>제8조(도로별 식재 기준) ① ~ ③</u> (현행과 같음)
<u>제7조의3</u> (생략)	<u>제10조</u> (현행 제7조의3과 같음)
<u>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u> (생략)	<u>제18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u> (현행과 같음)
<u>③</u> (생략)	<u>②</u> (현행 제3항과 같음)
<u>제3장 가로수 관리</u>	<u>〈삭제〉</u>
<u>〈신설〉</u>	<u>제3장 가로수 관리</u>
<u>제10조</u> (생략)	<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1조(가지치기) ①·②</u> (생략)	<u>제12조(가지치기) ①·②</u> (현행과 같음)
<u>④·⑤</u> (생략)	<u>③·④</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제12조</u> (생략)	<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u>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②</u> (생략)	<u>제14조(외과수술 등) ①·②</u> (현행과 같음)
<u>제14조</u> (생략)	<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u>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②</u>	<u>제17조(관리시설물) ①·②</u> (현행

(생략)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 ④ (생략)

제18조 (생략)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생략)

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과 같음)

제19조(주민참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30일 이내에 납부-----
-----.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3조(부담금의 징수) ① -----
제21조 및 제22조-----

-----.

② -----
---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생략)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신설〉

제23조 ~ 제25조 (생략)

----- 징수-----

--.

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삭제〉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